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4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4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1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4. 2024년도 청년미래기금 기본방향

- 가. 기금사업의 목표 :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
- 나.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
효과적인 청년창업 지원정책 마련

5. 2024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

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3년도 말 조성액 [㉠]	2024년도 조성계획			2024년도 말 조성액 [㉡] = [㉢] + [㉠]	비고
		수입 [㉢]	지출 [㉣]	증감 [㉤] = [㉢] - [㉣]		
청년미래기금	2,082,327	92,570	155,400	-62,650	2,019,677	

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4년도 말 조성액 [㉠]	용자금 미회수 채권 [㉡]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[㉢]	총 조성규모 [㉤] = [㉠] + [㉡] - [㉢]
청년미래기금	2,019,677	0	0	2,019,677

다. 자금 운용 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
계	92,750	73,551	41,846
공공예금이자수입	92,750	73,551	19,199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계	155,400	51,400	104,000
회의 및 심의 수당, 홍보물 제작	5,400	1,400	4,000
청년창업가 지원금	100,000	0	100,000
대-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	50,000	50,000	0

6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임.
-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은

공공예금 이자수입 92,750천원이며

지출내역은

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수당 3,400천원

홍보물 제작비 2,000천원

청년창업가 도약지원사업 사업화 지원금 100,000천원

대-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50,000천원

총 155,400천원임.

- 본 기금 2024년도 계획안은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례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향과 목표에 맞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일부개정) 2023.10.12 조례 제1379호

제3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
2.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
3.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
4.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